#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 장철민·이수진·서삼석

조승래 • 이수진비 • 이상민

한병도 • 박영순 • 김경만

윤건영 · 홍영표 · 민홍철

황유하 · 박재호 · 이워택

김진애 • 박성준 • 박찬대

박범계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도시가 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2).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

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제29조의5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를 "신규 채용인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 보조금 등의 지원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 다.

제29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혁신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한 지역에서 해당 제품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아 개 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 인재 채용 등) ① -----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 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 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 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 도권정비계획법 .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 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 ----사람(이하 "이전지역인 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재"라 한다)---신규 채용인원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 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 ⑤ (생 략)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 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 략) <신 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지역 인재의 채용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 보조금 등의 지원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이 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혁신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한

	지역에서 해당 제품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u>아니하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